

□ 소득금액증명 확인사항

발급번호	소 득 금 액 증 명 (년 귀속)						처 리 기 간		
							즉 시		
주 소									
성 명				주 민 등 록 번 호					
◇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 (단위 : 원)									
구 분	종합과세							분리 과세	총 결정세액
	이자	배당	사업	근로	연금	기타	합계		
수입금액									
소득금액									
*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* 분리과세 :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한 분리과세 소득(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)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* 총 결정세액 :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									
◇ 연말정산(지급명세서 제출) 현황 [※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] (단위 : 원)									
구 분	소 득 발 생 처		지급받은 총 액	소득금액	총 결정세액	비고			
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						
사업소득									
근로소득						(연말정산) (일용근로)			
연금소득									
종교인소득									
(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: , ~ ,)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 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세 무 서 장 (인)									

○ 2024. 6. 31. 이전 신청자는 전전년도(2022년) 소득금액증명 제출
 2024. 7. 1. 이후 신청자는 전년도(2023년) 소득금액증명 제출

○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(소득발생기간 고려하지 않음)

○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

○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

○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
 근로소득(수입금액)과 사업소득(소득금액)의 합계로 판단

○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,
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을 발급받아 제출